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화물배상책임보험)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신 후 메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배상책임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Master 및 House B/L(선하증권)/AWB(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량/증량명세서(Packing list)]
- 화물의 손상사진
- 화주 또는 적하보험자/변호사로부터 받은 배상요청 관련 공문
-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지시서 및 귀사에서 발행한 운임 Invoice(책임운송구간은 어디인지)
- 화주로부터 받은 Claim Notice(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수취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받은 Claim Notice 여야만 함.)
- 검정인 보고서(Survey Report)
- 협정서(Convention, Damage Report 등)
- 적하보험자/변호사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 1) Letter of Subrogation
 - 2)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시 필요한 중요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시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보험사기 (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즉시 지불 불가 또는 회수 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 청구나 손해(피보험자의 주채 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2.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3.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사기/범죄행위/부작위에 기인한 배상책임/비용
4.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비용
5.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행위(전쟁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손상으로 발생 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6.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이온방사/오염 및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에 대한 원인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 a.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b.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의 배상책임
7.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기구의 파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8.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해
9.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 3 자에 대한 배상청구
10.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

- Tel. 02) 2127-2382 / jisoo.han@chubb.com
- Tel. 02) 2127-2382 / ohjin.cheong@chubb.com